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 - 577
----------	---------

제출년월일 : 2024. 10. 15.

발의자 : 박은정,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박은경, 한명훈,
이대구, 선현우, 최찬규,
이진분, 김유숙, 현옥순,
설호영, 이혜경, 김재국,
이지화, 김진숙, 황은화,
한갑수, 최진호 의원(20인)

1. 주 문

- 전기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등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전기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필수불가한 사항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개정 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이유

- 2004년 4월 전기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전기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음.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권고적 성격으로 강행규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실효성이 낮다 할 수 있다.

전기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등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전기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필수불가한 사항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전기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등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차 공포증을 막기 위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 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 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 10.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법과 제도적 공백 속에서 금년 8월 인천 청라의 전기차 화재로 인해 23명의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차량 880대 등 재산 및 시설피해와 이재민 발생에 따른 주민생활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최근 전기차 공포증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 속에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법안 등 전기차 충전구역 시설에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또는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 15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제21대 국회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설비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당시 국회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재대응 및 안전에 관한 요건과 의무 등 규제에 관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기안전관리법」 등 분야별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분야의 시행령 등에서 정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으며,

환경부 또한 충전시설의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경우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증가의 이유로 개정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04년 4월 전기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 현행 법률 제11조의2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과 함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의 보급 대수는 2010년 최초 66대에서 2023년에 이르러 30만 2,994대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의 신고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전기차의 보급률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해당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또는 안전관리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 대처 방안 마련이 어렵고, 안전과 관련한 타법과 상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의무화를 제도화 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음.
- 당시 국회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는 소방안전 관련 개별 법령을 통한 규정과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증가의 사유로 법령 개정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의 지상설치 권장 사항과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으로 실효성이 낮음.
-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과 더불어 최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인해 23명의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차량 880대 등 재산 및 시설 피해를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전기차 공포증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기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등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 내용을 포함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